

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투자유치과)

제출일 : 2026. 3.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
- 1)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·자문에서 배제
 - 2)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 가능
 - 3) 위원이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진 회피
- 나. 조문상 용어·표기 오류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신설하고, 조문상 용어와 표기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임.
- 특히,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·자문에서 배제하고, 당사자의 기피 신청 및 위원의 회피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판단됨.
- 검토 결과, 본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,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